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826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국가스공사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장

3. [redacted]시장

4. [redacted]시장

5. [redacted]시장

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7. [redacted]시장

8. [redacted]시장

9.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6. 4. 12.

판 결 선 고 2016. 5.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군수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5. 원고에게 한 재산세 1,887,900원의 부과처분 중 1,81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4. 한 재산세 56,148,480원의 부과처분 중 53,92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11. 재산세 19,242,110원의 부과처분 중 18,479,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redacted]시장이 2014. 9. 5. 한 재산세 8,505,860원의 부과처분 중 8,168,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redacted]시장이 2014. 9. 5. 한 재산세 6,147,350원의 부과처분 중 5,90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4. 한 재산세 5,982,130원의 부과처분 중 5,74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4. 9. 4. 한 재산세 3,077,950원의 부과처분 중 2,955,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redacted]시장이 2014. 9. 5. 한 재산세 1,887,900원의 부과처분 중 1,81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redacted]시장이 2014. 9. 4. 한 재산세 1,425,660원의 부과처분 중 1,36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redacted]군수가 2014. 9. 5. 한 재산세 1,007,140원의 부과처분 중 96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 [redacted]시장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다툼없는 사실 및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제1호증, 을바 제4호증, 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① 피고 고양시 [redacted]구청장은 2014. 9. 4. 원고에게 한 재산세 56,148,480원의 부과처분 중 53,92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9. 11. 재산세 19,242,110원의 부과처분 중 18,479,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9. 5. 한 재산세 8,505,860원의 부과처분 중 8,168,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9. 5. 한 재산세 6,147,350원의 부과처분 중 5,90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9. 4. 한 재산세 5,982,130원의 부과처분 중 5,74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피고 고양시 [redacted]구청장은 2014. 9. 4. 한 재산세 3,077,950원의 부과처분 중 2,955,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9. 4. 한 재산세 1,425,660원의 부과처분 중 1,36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피고 [redacted]군수는 2014. 9. 5. 한 재산세 1,007,140원의 부과처분 중 96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취소하여 감액경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전액 직권취소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redacted]시장에 대한 청구의 당부

가.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1)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redacted]정부와 [redacted] 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15%), [redacted]공사(20.47%), 지방자치단체(7.93%) 등이다.

2) 피고 [redacted]시장은 2014. 9. 5.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재산세 감면의 주관적 요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감면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2015. 9. 5.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분 재산세 1,887,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5. 2. 1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 결정서는 원고에게 2015. 2. 23.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3호증의 1 내지 9, 4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등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는 구 [redacted]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에 대한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 부처 협의 지체로 실제 납입이 지연되었을 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다는 것을 반드시 설립 시 최초자본금 납입만을 의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

[redacted]공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원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나 공사로서의 공익성 유지의 필요 때문에 [redacted]공사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을 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처분 세액에 감면비율인 50%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 7.93%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1) 2014. 3. 24.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지방공기업법 부칙 제1조, 법률 제12507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더하여 구 [redacted]공사법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상법 제292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가 본질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속함을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7.93%)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계산된 원고가 피고 구리시장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1,813,040원(=1,887,900원×7.93%×50%)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81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시장,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시장,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시장, [redacted]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피고 구리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관계법령의 표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15

다.

제76조(설립 ·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